03분반 컴퓨터공학과 2학년

1434859 이선환

IT 관련 특허 분쟁에 관한 사례조사보고서

**1.서론**

**1.1 특허분쟁이란?**

○ 특허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다. 특히 규모가 큰 특허 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 한다.

○ 대중에 특허분쟁이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대중에 특허분쟁이 알려지게 되었다.

○ 특허는 본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특허가 기업들 간의 법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사용되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과 돈을 특허 분쟁 자체에 투자를 한다.

**1.2 특허분쟁 현황**

○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고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산업에서의 연구개발은 조직화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높아진다. 절대적인 특허의 수 자체보다 그 산업에 핵심적인 특허를 포트폴리오 구성에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특허 분쟁에서 우의를 점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IT 특허분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분야를 둘러싸고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IT 분야의 특허는 특허괴물이 매입을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실제 NPEs 특허소송이 소프트웨어 기술에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이미 국내 IT 서비스업체 중 하나도 최근 부상 중인 빅데이터 기술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NPEs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 최근 IT 기업들의 R&D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IT 특허출원이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중국∙일본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 표준화 기구들은 기술표준 선정에 앞서 관련된 특허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2.본론**

**2.1 IT산업의 특허출원 현황**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크게 Electrical Engineering, Instruments, Chemistry, Mechanical Engineering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특허출원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기술, 전자 기기, AV와 같은 IT유관산업이 상위 3대 특허출원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IT산업 관련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2009년 기준 865,937건으로 나타났고, 미국이 563,515건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한국이 330,681건, 중국이 206,93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2011년까지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출원 증가 분야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애플은 ‘디자인’ 분야에서 출원 건수가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한 2007년부터 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출 원이 급증했으며, 특히 유저인터페이스(UI), 아이콘 부문의 디자인 특허출원은 과거 5년(2002~2006년)에 비해 최근 5년(2007~2011년)간 9배나 증가했고, 전자기기와 미디어 장치에 대한 특허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분야 에 특허출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과거 5년 대비 최근 5년간 관련 특허출원이 14배나 증가했다.

○ 애플은 인수합병을 통해 획득한 특허를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전문기업을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애플의 특허괴물에는 록스타비드코, 디지터드 이노베이션, 인텔렉추얼벤처스, 아카시아리서치 등이 있다.

○ 이 중 애플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디지터드 이노베이션은 2010년에 설립된 신생 특허괴물로 최근 소니, 삼성전자, HTC, LG전자, 노키아, 팬택, 아마존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2.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

○ 최근 이슈가 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은 2011년 4월에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태블릿이 애플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2년 8월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 대해 1조 2천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졌다. 본 건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특허강국인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문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권리로 인정되고,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플 측 주장의 핵심은 첫째, 삼성전자 갤럭시가 고의로 애플 아이폰의 외관 및 UI 관련 디자인(tradedress)을 모방했다는 것, 둘째,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는 FRAND 선언에 따른 표준특허로 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주장은 첫째,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지닌 특허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이외에도 상용특허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과 관련하여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한국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판정승을 거두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에(CDMA관련 975 표준특허, 무선자원효율성관련 900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 4건 중 1건 침해했다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손가락 터치를 통해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속도가 느려져 화면의 경계를 표시하는 바운스백 기술(120특허)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불과 몇 시간 후에 벌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 판결에서는 공정경쟁 및 디자인 특허를 중시하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상용특허 6건 중 5건을 침해했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 983은 유효하며,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 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삼성전자가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에 대 해 FRAND 선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UMTS 표준 관련 특허는 유효하지만, 이를 내세우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했다.

**3.결론**

○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은 산업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의 환기 및 다양한 디자 인의 스마트폰 출시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법원에서 인정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었고, 애플의 디자인 독창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애플 브랜드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는 물론, 특히 국내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환기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이폰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향후 다수 출시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전쟁은 특허의 성격을 기술보호 목적에서 기술남용 목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IT시장 내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술혁신의 동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특허괴물의 확산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객관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필자의 시각에서는 현재의 미국 특허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실제로 애플의 GUI가 제록스의 GUI를 모티브로 삼아 개발되었다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처럼 애플도 스스로 모방의 전례를 밟기도 했다는 점에서 모방과 혁신이 과연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참고문헌**

《경향신문》(2012. 9. 28), “구글 슈미츠 회장 ‘시장서 승패 가려야…’ 애플의 특허 소송 우회비판”.

《디지털타임즈》(2012. 8. 27), “안드로이드 진영 ‘비상’ 걸렸다”.

《디지털타임즈》 (2012. 8. 29), “애플 ‘인기제품 압박’·삼성전자 ‘이의신청 올인’․소 송 장기화될 듯”.

《디지털타임즈》 (2012. 9. 4), “LTE특허 선점 경쟁 치열. 애플, 삼성전자의식 대량 매입”.

《디지털타임즈》 (2012. 11. 14), “천문학적인 애플세 현실로”.

《머니투데이》(2012. 9. 5), “美 법무부 송무책임자, 삼성전자-애플 소송, 평결 번 복 가능성 있어”.

《머니투데이》 (2012. 9. 5), “모서리 둥근 사각형? 애플도 시장트렌드 따랐다”.

《서울경제》(2012. 10. 18), “또 하나의 숨은 특허괴물 디지튜드”.

《아시아경제》(2012. 11. 12), “삼성전자-애플, 美 법원에 최종입장 전달.. 12월 심리 주목”.

《아이뉴스24》(2012. 11. 6), “애플, 특허전쟁서 구글에 한 방 먹었다”. 양대승 (2012. 11. 2), “특허와 공정거래”, KT경제경영연구소.

《연합뉴스》(2012. 8. 13), “英경제지 애플-삼성전자 소송, 혁신 역사에서 슬픈 날”.

《연합뉴스》 (2012. 9. 28), “애플, 휘는 화면 장착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출원”.

《이데일리》(2012. 9. 5), “애플, 아이폰 만들 때 삼성전자․LG 참고했나?”.

《조선닷컴》 (2012. 8. 25), “삼성전자-애플, 美 법원 판결 후 향후 행보는?”.

《중앙일보》(2012. 9. 11), “내달 ITU 특허회의에 삼성전자․애플 참여, 혁신 대신 법정서 시간낭비 옳지 않아”.